

마이더스 거북이 70 소득공제 장기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

항목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p>제 2 부. 집합투 자기구에 관한 사항</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p> <p>나. 과세</p>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p>	<p>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p>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p> <p>-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p>
<p>(4) 수익자(소득 공제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제혜택</p>	<p>농어촌특별세 부과내용 명시</p>	<p>정정전1) 참고</p>	<p>정정후1) 참고</p>

정정전 1)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 주요 사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생략)
가입자격	
가입기간	
저축계약기간	
가입한도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1)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 주요 사항]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현행과 동일)
가입자격	
가입기간	
저축계약기간	
가입한도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 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 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 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현행과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